|  |  |  |
| --- | --- | --- |
| **중화인민공화국 특허(專利)법**  (1984년 3월 12일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4차 회의 통과, 1992년 9월 4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7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개정에 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00년 8월 25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개정에 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2008년 12월 27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개정에 대한 결정》에 따라 제3차 개정, 2020년 10월 17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개정에 대한 결정》에 따라 제4차 개정,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목 차**  **제1장** 총 칙  **제2장** 특허권의 부여요건  **제3장** 특허의 출원  **제4장** 특허출원의 심사와 등록  **제5장** 특허권의 존속기간, 종료 및 무효  **제6장** 특허실시의 특별허가  **제7장** 특허권의 보호  **제8장** 부 칙  **제1장 총 칙**  **제1조** 특허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발명창조를 장려하고 발명창조의 응용을 보급하고 혁신능력을 제고하고 과학기술의 진보와 경제사회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법에서의 발명창조라 함은 발명, 실용신안 및 의장을 가리킨다.  발명이란 제품, 방법 또는 그 개선에 대해 제기한 새로운 기술방안을 가리킨다.  실용신안이란 제품의 형태, 구조 또는 그 결합에 대해 제기한 실용적인 신기술방안을 가리킨다.  의장이란 제품의 전체 혹은 일부의 형태, 도면 또는 그 결합, 그리고 칼라와 형태, 도안의 결합에 미적 감각을 부여하는, 공업응용에 적합한 새로운 디자인을 가리킨다.  **제3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전국의 특허업무를 관장하고 특허출원을 통일적으로 수리 및 심사하며 법에 의해 특허권을 부여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본 행정구역내의 특허업무를 책임지고 처리한다.  **제4조** 특허를 출원하는 발명창조가 국가의 안전이나 중대한 이익과 관계되므로 비밀에 붙여야 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유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 법률, 사회공공도덕을 위반하거나 공공이익에 방해되는 발명창조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하고 유전자원을 취득하거나 그를 이용함과 아울러 그 유전자원에 의존하여 완성한 발명창조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6조** 본 단위(单位)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주로 본 단위의 물질과 기술여건을 사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는 직무발명창조로 된다. 직무발명창조의 특허 출원권은 당해 단위에 속하며, 출원이 등록된 후에는 당해 단위가 특허권자로 된다. 당해 단위는 법에 따라 그 직무 발명창조 특허출원 권리와 특허권을 처분하여 관련 발명창조의 실시와 운용을 촉진시킬 수 있다.  非직무 발명창조의 특허 출원권은 발명자 또는 고안자에게 속한다. 출원이 등록된 후에는 당해 발명자 또는 고안자가 특허권자로 된다.  본 단위의 물질과 기술여건을 사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로서 단위와 발명자 또는 고안자 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특허의 출원권과 특허권의 귀속에 대해 약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제7조** 발명자 또는 고안자의 非직무 발명창조의 특허출원은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강압하지 못한다.  **제8조** 2개 이상의 단위나 개인이 합작하여 공동 완성한 발명창조, 또는 1개 단위나 개인이 기타 단위나 개인의 의뢰를 받고 완성한 발명창조로서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그 특허 출원권은 완성 또는 공동 완성한 단위나 개인에게 속한다. 출원이 등록된 후에는 출원 단위 또는 개인이 특허권자로 된다.  **제9조** 같은 발명창조에 대해서는 하나의 특허권을 부여한다. 다만, 동일 출원인이 같은 날에 같은 발명창조에 대해 실용신안의 등록과 발명특허를 출원하고 먼저 취득한 실용신안권이 아직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출원인이 당해 실용신안권을 포기하고자 성명한 경우에는 발명 특허권을 부여할 수 있다.  2개 이상의 출원인이 각기 같은 발명창조에 대해 특허를 출원한 경우에는 선 출원인에게 특허권을 부여한다.  **제10조**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은 양도할 수 있다.  중국의 단위나 개인이 외국인, 외국기업 또는 외국의 기타 조직에게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마땅히 유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양도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사자는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아울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등록해야 하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이를 공고한다. 특허 출원권 또는 특허권의 양도는 등록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1조** 발명과 실용신안 특허권을 부여한 후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특허권자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서는 그 특허를 실시하지 못한다. 즉, 생산경영을 목적으로 그 특허제품을 제조, 사용, 판매승낙, 판매, 수입하거나 또는 그 특허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며, 직접 그 특허방법으로 얻은 제품을 사용, 판매승낙, 판매, 수입하지 못한다.  의장권을 부여한 후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특허권자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서는 그 의장을 실시하지 못한다. 즉, 생산경영을 목적으로 그 의장권 제품을 제조, 판매 승낙, 판매, 수입하지 못한다.  **제12조** 어떠한 단위나 개인을 불문하고 타인의 특허를 실시하려면 특허권자와 실시허가계약을 체결하고 특허권자에게 특허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허가를 득한 자는 계약에서 규정한 이외의 그 어떠한 단위나 개인에게 당해 특허의 실시를 허가하지 못한다.  **제13조** 발명특허 출원이 공개된 후 출원인은 그 발명을 실시하는 단위나 개인에게 적당한 비용을 지불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 공유자가 그 권리 행사에 대해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약정이 없는 경우 공유자는 단독으로 실시하거나 일반 허가방식으로 타인에게 특허 실시를 허가할 수 있다. 타인에게 그 특허 실시를 허가하는 경우 수취한 사용료는 마땅히 공유자 간에 분배되어야 한다.  전항에서 규정한 상황을 제외하고, 공유 특허의 출원권 또는 특허권을 행사시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5조** 특허권을 수여받은 단위는 직무 발명창조의 발명자 또는 고안자에게 장려를 해야 한다. 발명창조 특허가 실시된 후에는 그 보급 응용범위와 취득한 경제수익에 따라 발명자 또는 고안자에게 합리적은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국가는 특허권을 수여받은 단위에서 주주권, 선물권, 배당 등 방식을 취하여 발명인 혹은 고안자들이 합리적으로 혁신 수익을 함께 나누도록 재산권 격려를 한다.  **제16조** 발명자 또는 고안자는 특허서류에 자기가 발명자 또는 고안자임을 밝힐 권한이 있다.  특허권자는 그 특허제품 또는 해당 제품의 포장에 특허표지를 명시할 수 있다.  **제17조** 중국에 상주거처 또는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 외국기업 또는 외국의 기타 조직이 중국에서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국가와 중국 간에 체결한 협정이나 공동 참가한 국제조약, 또는 호혜의 원칙에 따라, 아울러 이 법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제18조** 중국에 상주거처 또는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 외국기업 또는 외국의 기타 조직이 중국에서 특허를 출원하거나 기타 특허업무를 처리 시에는 법에 의해 설립한 특허대리기구에 의뢰해야 한다.  중국의 단위나 개인이 국내에서 특허를 출원하거나 기타 특허업무를 처리 시에는 법에 의해 설립한 특허대리기구에 의뢰할 수 있다.  특허대리기구는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하고 의뢰자가 부여한 권한에 따라 특허 출원 또는 기타 특허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특허출원이 이미 공개 또는 공고된 경우는 제외하고 의뢰자의 발명창조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책임을 진다. 특허대리기구에 대한 구체적 관리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19조** 단위나 개인 누구든지 중국에서 완성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외국에서 출원할 경우에는 먼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보고하여 비밀 해당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비밀심사의 절차, 기한 등은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중국의 단위나 개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참가한 유관 국제조약에 근거하여 국제특허 출원을 제출할 수 있다. 출원인이 국제특허 출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참가한 유관 국제조약, 이 법 및 국무원의 유관 규정에 근거하여 국제특허 출원을 처리한다.  이 조 제1항의 규정을 어기고 외국에서 발명이나 실용신안 등록출원을 한 후 다시 중국에서 특허 출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20조** 특허 출원과 특허권 행사 시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특허권을 남용하여 공공이익과 타인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특허권을 남용하거나 경쟁을 배제 혹은 제한하여 독점행위를 구성한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21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객관, 공정, 정확, 시의적절의 요구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특허와 관련되는 신청과 청구를 처리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정보 공공서비스체계의 건설을 강화하여 특허정보를 완벽, 정확, 시의 적절하게 발표하고 특허 기본데이터를 제공하며, 정기적으로 특허공보를 출판하여 특허정보의 전파와 활용을 축진시켜야 한다.  특허출원이 공개되거나 공고되기 전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업무직원 및 관계인원은 그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가진다.  **제2장 특허권 수여요건**  **제22조** 특허권을 부여하는 발명과 실용신안은 참신성, 창조성 및 실용성을 구비해야 한다.  참신성이란 그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기존의 기술에 속하지 않고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같은 발명이나 실용신안에 대해 출원일 이전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출원한 적도 없으며, 아울러 출원일 이후에 공개된 특허 출원서류나 공고된 특허서류에도 기재된 것이 없음을 가리킨다.  창조성이란 기존의 기술에 비해 그 발명이 선명한 실질적 특성과 현저한 진보가 있거나 그 실용신안이 실질적 특징과 진보가 있는 것을 가리킨다.  실용성이란 그 발명이나 실용신안이 제조 또는 사용이 가능하고 아울러 적극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가리킨다.  이 법에서의 기존의 기술이라 함은 출원일 이전에 국내외의 공중이 숙지하고 있는 기술을 가리킨다.  **제23조** 특허권을 부여하는 의장은 기존의 디자인에 속하지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단위나 개인 누구도 그와 같은 의장에 대해 출원일 이전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신청한 적이 없고 출원일 이후에 공고한 특허서류에도 기재된 것이 없어야 한다.  특허권을 부여하는 의장은 기존 디자인 또는 기존 디자인의 특징의 조합과 비교할 때 뚜렷한 차별이 있어야 한다.  특허권을 부여하는 의장은 타인이 출원일 이전에 이미 취득한 합법적인 권리와 충돌되어서는 아니된다.  이 법에서의 기존 디자인이란 출원일 이전에 국내외의 공중이 숙지하고 있는 디자인을 가리킨다.  **제24조** 특허를 출원하는 발명창조가 출원일 전 6개월 내에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참신성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1) 국가에 긴급상태가 나타났거나 비상 상태 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최초로 공개한 경우  (2) 중국정부가 주관하거나 인정하는 국제전시회에서 최초 전시된 경우  (3) 규정한 학술회의나 기술회의에서 최초 발표된 경우  (4) 타인이 출원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 내용을 누설한 경우.  **제25조** 아래의 각호 사항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1) 과학적 발견  (2) 지능 활동의 법칙과 방법  (3) 질병의 진단과 치료방법  (4) 동물과 식물의 품종  (5) 원자핵 변환방법 및 원자핵 변환방법으로 얻은 물질  (6) 평면 인쇄물의 도안, 칼라 또는 양자의 결합에 대한, 주로 로고작용을 하는 디자인.  전항 제(4)호에 열거한 제품의 생산방법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특허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3장 특허의 출원**  **제26조** 발명 또는 실용신안 등록을 출원 시에는 출원서, 설명서 및 요약서와 권리청구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출원서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명칭, 발명자의 성명,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 주소, 그리고 기타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설명서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대해 명쾌하고도 완정한 설명을 가하고 아울러 소속 기술분야의 기술자가 실현이 가능한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필요시에는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요약서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기술요점을 간단하게 설명해야 한다.  권리청구서는 설명서를 의거로 권리보호 청구범위를 명확하고 간단하게 한정해야 한다.  유전자원에 의해 완성한 발명창조일 경우 출원인은 특서 신청서류에서 그 유전자원의 직접적인 출처와 원시 출처를 설명해야 하며, 출원인이 원시 출처를 설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진술해야 한다.  **제27조** 의장등록을 출원 시에는 출원서, 그 의장의 도면이나 사진, 그리고 그 의장에 대한 간단한 설명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출원인이 제출한 유관 도면이나 사진은 특허보호를 요구하는 제품의 외관디자인을 명쾌하게 반영해야 한다.  **제28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특허 출원 서류를 접수한 날이 바로 신청일로 된다. 출원서류를 우송한 경우에는 우편소인 일자가 신청일로 된다.  **제29조** 출원인이 외국에서 처음 발명이나 실용신안 등록 출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12개월 내에, 또는 외국에서 처음 의장 등록을 출원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중국에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특허 출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외국과 중국 간에 체결한 협정이나 공동 참가한 국제조약, 또는 상호 인정하는 우선권 원칙에 의거하여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  출원인이 중국에서 처음 발명이나 실용신안 등록 출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12개월 내에 혹은 중국에서 의장 등록 출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같은 주제를 가지고 특허 출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  **제30조** 출원인이 발명, 실용신안 특허 우선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원서를 제출할 때 서면 성명을 발표하고 아울러 제1회 출원일로부터 16개월 내에 최초 제출한 특허출원 서류의 부본을 제출해야 한다.  출원인이 의장 특허 우선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원 시에 서면 성명을 발표해야 하며, 아울러 3개월 내에 최초 제출한 특허 출원서류의 부본을 제출해야 한다.  출원인이 서면 성명을 발표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이 지나도 특허출원 서류 부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선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31조** 한건의 발명이나 실용신안 등록출원은 하나의 발명이나 실용신안에 한한다. 하나의 총적 발명구상에 속하는 두개 이상의 발명이나 실용신안은 한건으로 출원할 수 있다.  한건의 의장 등록출원은 하나의 외관디자인에 한한다. 같은 제품의 두개 이상의 유사한 의장, 또는 같은 종류이면서 세트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 이상의 의장은 한건으로 출원할 수 있다.  **제32조** 출원인은 특허권을 부여받기 전에 수시로 그 특허출원을 철회할 수 있다.  **제33조** 출원인은 그 특허 출원서류를 수정할 수 있다. 다만, 발명과 실용신안 등록출원 서류에 대한 수정은 원 설명서와 권리청구서에 기재된 범위를 초과하지 못하며, 의장 등록출원 서류에 대한 수정은 원 도면 또는 사진이 표시한 범위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4장 특허출원의 심사와 등록**  **제34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병특허 출원을 접수한 후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 이 법의 요구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출원일로부터 만 18개월 내에 바로 공개해야 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출원인의 신청에 따라 그 출원서류를 조속히 공개할 수 있다.  **제35조** 발명특허를 출원한 날로부터 3년 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출원인이 수시로 제기한 신청에 근거하여 그 출원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출원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 심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출원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필요 시 스스로 발명특허 출원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36조** 발명특허의 출원인이 실질적 심사를 신청 시에는 출원일 이전에 그 발명과 관계되는 참조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미 외국에서 발명특허를 출원하였을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출원인에게 지정한 기한 내에 당해 국가에서 그 출원을 심사하기 위해 검색한 자료나 심사결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출원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 출원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7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특허 출원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진행한 후 이 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원인에게 통지하여 지정한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그 출원에 대해 수정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출원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답변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출원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8조** 출원인이 그가 출원한 발명특허에 대해 의견을 진술했거나 수정을 거친 후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그래도 이 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39조** 실질적 심사를 거쳐 발명특허 출원에 대한 기각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특허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하고 발명특허증서를 발급하며 아울러 등록하고 공고한다. 발명특허권은 공고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40조** 초보적 심사를 거쳐 실용신안과 의장 등록 출원에 대한 기각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하고 상응하는 권리증서를 발급하며 아울러 등록하고 공고한다. 실용신안권과 의장권은 공고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41조** 특허 출원인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기각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재심 후 결정을 내리고 아울러 해당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출원인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재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5장 특허권의 존속기간, 종료 및 무효**  **제42조** 발명특허권의 존속기간은 20년이고 실용신안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이며, 의장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15년으로서 모두 출원한 날로부터 기산된다.  발명특허 출원일로부터 만 4년임과 아울러 실질 심사 청구일로부터 만 3년 후에 발명 특허권을 수여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권자의 청구에 따라 발명 특허 수여 과정 중에서의 불합리한 지연에 대해 특허권 기간의 보상을 해야 한다. 다만, 출원인으로 인해 초래된 불합리한 연기는 예외로 한다.  신약 출시 심사 허가 기간에 대해 보상하기 위해 중국에서 판매허가를 취득한 신약 관련 발명특허에 대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권자의 청구에 따라 특허권 기한에 대해 보상을 한다. 보상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판매 비준을 받은 신약의 총 특허권 기간은 14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43조**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부여받은 그 해부터 연 유지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44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특허권은 기한 만료 전에 종료된다.  (1) 규정에 따라 연 유지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특허권자가 서면으로 그 특허권을 포기하기로 성명을 발표한 경우  특허권이 만기 전에 종료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이를 등록하고 공고한다.  **제45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특허권의 부여를 공고한 날로부터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라도 그 특허권의 부여가 이 법의 유관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당해 특허에 대한 무효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제46조** 특허재심위원회는 특허권 무효 신청을 적시에 심사하고 결정을 내려야 하며, 아울러 신청인과 특허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특허권의 무효 선고 결정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등록하고 공고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특허권 무효 선고 또는 특허권 유지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무효선고 절차를 신청한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제3자의 신분으로 소송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제47조** 무효선고를 받은 특허권은 시초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특허권의 무효 선고 결정은 특허권 무효를 선고하기 전에 이미 집행된 인민법원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판결과 조정서, 이미 이행되었거나 강제 집행된 특허권 분쟁처리 결정, 그리고 이미 이행된 특허실시허가계약과 특허권 양도계약에 대해서는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단, 특허권자가 악의적으로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배상을 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특허권 침해 배상금, 특허사용료, 특허권 양도비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공정 원칙에 분명히 위배될 경우에는 마땅히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제6장 특허실시의 특별허가**  **제48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 지방인민정부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동급 유관부서와 함께 조치를 취하여 특허공공서비스를 강화하고 특허의 실시와 운용을 촉진시켜야 한다.  **제49조** 국유기업과 사업단위의 발명특허가 국가이익 또는 공공이익에 중대한 의의를 갖고 있는 경우 국무원 유관 주관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국무원의 비준을 받고 그 비준 범위 내에서의 보급 응용을 결정하고 실시단위를 지정할 수 있다. 실시단위는 국가의 규정에 따라 특허권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제50조** 특허권자는 자율적으로 서면 방식으로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 그 특허를 실시하는 것을 허가하고자 성명을 발표함과 아울러 허가사용료의 지불방식과 기준을 명확히 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이를 공고하고 오픈 허가를 실시한다. 실용신안, 의장 특허에 대한 오픈허가 성명을 하는 경우는 특허권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허권자가 오픈허가 성명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서면방식으로 제출해야 하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이를 공고한다. 오픈허가 성명이 공고에 의해 취소된 경우 그 전에 부여한 오픈허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1조**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라도 오픈허가 특허를 실시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특허권자에게 통지하고 아울러 공고의 허가사용료 지불방식,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지불한 후 특허실시 허가를 취득할 수 있다.  **제52조** 당사자가 오픈허가 특허의 실시에 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협상으로 해결하며, 협상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협상 미결인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조정을 요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53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실시조건을 구비한 단위나 개인의 신청에 근거하여 발명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실시하는 강제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1)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만료됨과 아울러 특허 출원을 제출할 날로부터 4년이 만료되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특허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또는 충분히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특허권자의 특허권 행사 행위가 법에 의해 독점행위로 인정되어 경쟁에 미치는 당해 행위의 불리한 영향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한 경우.  **제54조** 국가에 긴급사태 또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공공이익을 위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실시하는 강제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55조** 공중의 건강을 위하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권을 취득한 약품을 제조하게 하고 아울러 그 약품을 중화인민공화국이 참가한 유관 국제조약에서 규정한 국가나 지역에 수출하는 강제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56조** 특허권을 취득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특허권을 이미 취득한 이전의 발명이나 실용신안보다 현저한 경제적 의의를 가지는 중대 기술진보가 있으나, 그를 실시하려면 이전의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실시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이후 특허권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이전의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실시하는 강제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강제허가 실시를 부여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이전 특허권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그에게 이후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실시하는 강제허가를 부여할 수도 있다.  **제57조** 강제허가와 관련되는 발명창조가 반도체 기술인 경우 그 실시는 공공이익을 위함과 아울러 이 법 제53조 제(2)호에서 규정한 상황에만 국한된다.  **제58조** 이 법 제53조 제(2)호,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부여하는 강제허가를 제외한 기타 강제허가 실시는 주로 국내시장에 대한 공급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제59조** 이 법 제53조 제(1)호,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허가를 신청하는 단위나 개인은 그가 합리적인 조건으로 특허권자에게 해당 특허실시에 대한 허가를 청구하였으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허가를 득하지 못한 관련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제60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강제허가 실시를 부여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지체 없이 특허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아울러 이를 등록하고 공고해야 한다.  강제허가 실시를 부여하는 결정은 강제하가의 이유에 근거하여 그 실시 범위와 기간을 규정해야 한다. 강제허가의 이유가 없어지고 다시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권자의 청구에 따라 심사한 후 강제허가 실시를 종결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제61조** 강제허가 실시를 부여받은 단위나 개인은 그 실시권을 독점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실시하도록 허가할 권한도 없다.  **제62조** 강제허가 실시를 부여받은 단위나 개인은 특허권자에게 합리적인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중화인민공화국이 참가한 유관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사용료를 지불하는 경우 그 금액은 쌍방이 협상을 통해 약정하며, 협상 미결일 경우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재결한다.  **제63조** 특허권자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강제허가 실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또는 특허권자와 강제허가 실시를 부여받은 단위나 개인이 국무원 특허행정관리부서의 강제허가 실시 사용료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7장 특허권의 보호**  **제64조** 발명특허 또는 실용신안권에 대한 보호범위는 그 권리청구의 내용에 준하며, 설명서와 첨부 도면은 권리청구의 해석에 사용할 수 있다.  의장권의 보호범위는 도면 또는 사진에 표시된 당해 제품의 외관디자인에 준하며, 간단한 설명은 도면 또는 사진에 표시된 당해 제품의 외관디자인의 해석에 사용할 수 있다.  **제65조** 특허권자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서 그 특허를 실시하여 특허권을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협상을 원하지 않거나 협상 미결인 경우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특허업무 관리부서에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특허업무 관리부서가 특허권 침해행위가 성립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허권 침해자에게 그 권리침해 행위를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이에 불복할 경우에는 처리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권리침해자가 기간이 만료되어도 소를 제기하지 않고 권리침해 행위를 중지하지도 않는 경우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특허권 침해 배상금액에 대해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을 거쳐도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66조** 특허권 침해 분쟁이 신제품 제조방법의 발명특허와 관련되는 경우 같은 제품을 제조하는 단위 또는 개인은 그 제품의 제조방법이 그 특허방법과 다르다는 증명을 제시해야 한다.  특허권 침해 분쟁이 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과 관련되는 경우 인민법원 또는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상관 실용신안이나 의장에 대해 검색,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여 작성한 특허권평가보고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하여 특허권 침해 분쟁을 심리, 처리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특허권자, 이해관계자 혹은 권리침해 소송대상자는 스스로 특허권 평가보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제67조** 특허권 침해 분쟁에서 권리침해 소송상대자가 그가 실시한 기술이나 디자인이 기존 기술 또는 기존 디자인에 속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 침해행위가 구성되지 아니한다.  **제68조** 특허를 모조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이외에 특허 법 집행 담당부서는 시정을 명함과 아울러 공고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는 동시에 불법소득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5만위안 이하의 경우에는 2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9조** 특허 법 집행 담당부서는 이미 취득한 증거에 근거하여 특허 모조행위 협의에 대해 조사 처리 시 아래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련 당사자에게 질문하고 불법 용의행위와 관련되는 상황을 조사 2. 당사자의 불법 용의 행위 장소 현장을 검사 3. 불법 용의 행위와 관련되는 계약, 영수증, 장부 및 기타 관련 서류를 사열, 복제 4. 불법 용의 행위와 관련되는 제품을 검사 5. 특허 모조제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차압 혹은 압류 가능.   특허업무 관리부서가 특허권자 혹은 이해관계자의 청구에 따라 특허 권리침해 분쟁을 처리 시에는 전항 (1)호, (2)호, (4)호에 열거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허 법 집행 담당부서, 특허업무 관리부서가 법에 따라 전항에서 규정한 직권을 행사 시 당사자는 그에 협조해야 하며, 거절하거나 방해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70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권자 혹은 이해관계자의 청구에 따라 전국에서 중대한 영향이 있는 특허 권리침해 분쟁을 처리할 수 있다.  지방인민정부 특허업무관리부서는 특허권자 혹은 이해관계자의 청구에 따라 특허권리침해 분쟁을 처리하고 본 행정구역내의 동일 특허권 침해안건은 병합 처리할 수 있다. 구역을 벗어난 동일 특허권 침해안건은 상급 지방인민정부 특허업무관리부서에서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1조** 특허권 침해의 배상금액은 권리침해로 인한 권리자의 실제 손실 혹은 권리침해자가 그 권리침해로 취득한 이익에 따라 확정하며, 권리자의 손실 또는 권리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특허 허가사용료의 배를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확정한다. 특허권을 고의적으로 침해하여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상술한 방법에 따라 확정한 금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금액에 따라 배상금을 확정한다.  권리자의 손실, 권리침해자가 얻은 이익 및 특허 허가사용료를 모두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은 특허권의 종류, 권리침해 행위의 성격 및 사안 등 요소에 근거하여 3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의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배상금액에는 권리자가 권리침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인민법원은 배상금액을 확정하기 위해 권리자가 최대한 입증 후 권리침해 행위와 관련되는 장부, 자료를 주로 권리침해자가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권리침해자에게 관련 장부, 자료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권리침해자가 제공을 거부하거나 허위 장부,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자의 주장과 제공한 증거를 참조하여 배상금액을 판정할 수 있다.  **제72조**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타인이 특허권 침해 혹은 그 권리 실현을 방해하는 행위를 실시하고 있거나 곧 실시하게 되어 즉시 제지하지 아니한다면 그의 합법적 권익에 만회할 수 없는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재산보전을 취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명하거나 혹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73조** 특허권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증거가 멸실될 수 있거나 향후 취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제74조** 특허권 침해의 소송시효는 3년으로서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권리침해 행위와 권리침해자를 알거나 알 수 있어야 하는 날로부터 기산된다.  발명특허 출원이 공개된 후부터 특허권을 부여받기 전에 당해 발명을 사용하고도 적당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특허권자가 사용료의 지불을 요구하는 소송시효는 3년이며, 특허권자가 타인이 그 발명을 사용한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어야 하는 날로부터 기산된다. 다만, 특허권자가 특허권이 부여되기 전에 이미 알거나 알 수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부여일로부터 기산된다.  **제75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허권 침해행위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1) 특허권자 또는 그의 허가를 얻은 단위, 개인이 특허제품이나 특허방법에 의해 직접 얻은 제품을 판매한 후 그 제품을 사용, 판매승낙, 판매, 수입한 경우  (2) 특허 출원일 전에 이미 같은 제품을 제조했거나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거나 또는 이미 제조, 사용에 필요한 준비를 다하고 단지 원 범위 내에서 계속 제조, 사용하는 경우  (3) 중국의 영토, 영해, 영공을 임시 통과하는 외국의 운송수단으로서 그 소속국가와 중국 사이에 체결한 협정 또는 공동 참가한 국제조약, 또는 호혜의 원칙에 따라 운송수단의 자체수요에 의해 그 장치와 설비에 관련 특허를 사용하는 경우  (4) 전문 과학연구와 실험을 위하여 관련 특허를 사용하는 경우  (5) 행정 심사비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허약품 또는 특허 의료기기를 사용, 수입하거나 또는 그를 목적으로 특허약품이나 특허 의료기기를 전문 제조, 수입하는 경우.  **제76조** 약품출시 심사허가 과정에서 약품출시 허가 신청인이 관련 특허권자 혹은 이해관계자 간에 등록 신청 약품과 관련한 특허권에 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련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등록 신청을 제출한 약품 관련 기술방안이 타인의 약품 특허권보호 범위에 들었는지에 대해 판결을 내리도록 청구할 수 있다.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서는 규정한 기한 내에 인민법원의 유효 판결에 따라 관련 약품의 출시 허가를 잠시 중지할 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약품출시 허가 신청인과 관련 특허권자 혹은 이해관계자는 등록신청 약품 관련 특허권 분쟁에 대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행정 재결을 청구할 수도 있다.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서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와 함께 약품출시 허가 심사 및 약품출시 허가 신청단계의 특허권분쟁 해결과 관련한 구체적인 연결방법을 제정하여 국무원에 보고하여 동의를 얻은 후 실시한다.  **제77조** 생산 경영을 위해 특허권자의 허가를 득하지 않은 것을 모르고 제조 및 판매한 특허권 침해제품을 사용, 판매승낙 또는 판매하였을 경우, 당해 제품의 합법적인 출처를 증명할 수 있다면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78조** 이 법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외국에서 특허를 출원하여 국가의 기밀을 누설한 경우 소재단위 또는 상급 주관기관은 그에게 행정처분을 주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9조**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사회에 특허제품을 추천하는 등의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못한다.  특허업무 관리부서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상급 기관 또는 감찰기관은 시정을 명하고 영향을 제거하며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직접 책임을 진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제80조** 특허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국가기관의 업무직원과 기타 유관 국가기관의 업무직원이 직무에 태만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부정을 행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범죄처벌에는 이르지 아니한 경우 법에 의해 처분을 한다.  **제8장 부 칙**  **제81조** 국무원 특허행정관리부서에 특허를 출원하거나 기타 수속을 밟을 때에는 규정에 따라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제82조** 이 법은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1984年3月12日第六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四次会议通过；根据1992年9月4日第七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二十七次会议《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的决定》第一次修正；根据2000年8月25日第九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十七次会议《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的决定》第二次修正；根据2008年12月27日第十一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六次会议《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的决定》第三次修正；根据2020年10月17日第十三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二十二次会议《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的决定》第四次修正，自2021年6月1日起施行）  **目　录**  **第一章　总 则**  **第二章　授予专利权的条件**  **第三章　专利的申请**  **第四章　专利申请的审查和批准**  **第五章　专利权的期限、终止和无效**  **第六章　专利实施的特别许可**  **第七章　专利权的保护**  **第八章　附　则**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保护专利权人的合法权益，鼓励发明创造，推动发明创造的应用，提高创新能力，促进科学技术进步和经济社会发展，制定本法。  **第二条**　本法所称的发明创造是指发明、实用新型和外观设计。  发明，是指对产品、方法或者其改进所提出的新的技术方案。  实用新型，是指对产品的形状、构造或者其结合所提出的适于实用的新的技术方案。  外观设计，是指对产品的整体或者局部的形状、图案或者其结合以及色彩与形状、图案的结合所作出的富有美感并适于工业应用的新设计。  **第三条**　国务院专利行政部门负责管理全国的专利工作；统一受理和审查专利申请，依法授予专利权。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管理专利工作的部门负责本行政区域内的专利管理工作。  **第四条**　申请专利的发明创造涉及国家安全或者重大利益需要保密的，按照国家有关规定办理。  **第五条**　对违反法律、社会公德或者妨害公共利益的发明创造，不授予专利权。  对违反法律、行政法规的规定获取或者利用遗传资源，并依赖该遗传资源完成的发明创造，不授予专利权。  **第六条**　执行本单位的任务或者主要是利用本单位的物质技术条件所完成的发明创造为职务发明创造。职务发明创造申请专利的权利属于该单位，申请被批准后，该单位为专利权人。该单位可以依法处置其职务发明创造申请专利的权利和专利权，促进相关发明创造的实施和运用。  非职务发明创造，申请专利的权利属于发明人或者设计人；申请被批准后，该发明人或者设计人为专利权人。  利用本单位的物质技术条件所完成的发明创造，单位与发明人或者设计人订有合同，对申请专利的权利和专利权的归属作出约定的，从其约定。  **第七条**　对发明人或者设计人的非职务发明创造专利申请，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压制。  **第八条**　两个以上单位或者个人合作完成的发明创造、一个单位或者个人接受其他单位或者个人委托所完成的发明创造，除另有协议的以外，申请专利的权利属于完成或者共同完成的单位或者个人；申请被批准后，申请的单位或者个人为专利权人。  **第九条**　同样的发明创造只能授予一项专利权。但是，同一申请人同日对同样的发明创造既申请实用新型专利又申请发明专利，先获得的实用新型专利权尚未终止，且申请人声明放弃该实用新型专利权的，可以授予发明专利权。  两个以上的申请人分别就同样的发明创造申请专利的，专利权授予最先申请的人。  **第十条**　专利申请权和专利权可以转让。  中国单位或者个人向外国人、外国企业或者外国其他组织转让专利申请权或者专利权的，应当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办理手续。  转让专利申请权或者专利权的，当事人应当订立书面合同，并向国务院专利行政部门登记，由国务院专利行政部门予以公告。专利申请权或者专利权的转让自登记之日起生效。  **第十一条**　发明和实用新型专利权被授予后，除本法另有规定的以外，任何单位或者个人未经专利权人许可，都不得实施其专利，即不得为生产经营目的制造、使用、许诺销售、销售、进口其专利产品，或者使用其专利方法以及使用、许诺销售、销售、进口依照该专利方法直接获得的产品。  外观设计专利权被授予后，任何单位或者个人未经专利权人许可，都不得实施其专利，即不得为生产经营目的制造、许诺销售、销售、进口其外观设计专利产品。  **第十二条**　任何单位或者个人实施他人专利的，应当与专利权人订立实施许可合同，向专利权人支付专利使用费。被许可人无权允许合同规定以外的任何单位或者个人实施该专利。  **第十三条**　发明专利申请公布后，申请人可以要求实施其发明的单位或者个人支付适当的费用。  **第十四条**　专利申请权或者专利权的共有人对权利的行使有约定的，从其约定。没有约定的，共有人可以单独实施或者以普通许可方式许可他人实施该专利；许可他人实施该专利的，收取的使用费应当在共有人之间分配。  除前款规定的情形外，行使共有的专利申请权或者专利权应当取得全体共有人的同意。  **第十五条**　被授予专利权的单位应当对职务发明创造的发明人或者设计人给予奖励；发明创造专利实施后，根据其推广应用的范围和取得的经济效益，对发明人或者设计人给予合理的报酬。  国家鼓励被授予专利权的单位实行产权激励，采取股权、期权、分红等方式，使发明人或者设计人合理分享创新收益。  **第十六条**　发明人或者设计人有权在专利文件中写明自己是发明人或者设计人。  专利权人有权在其专利产品或者该产品的包装上标明专利标识。  **第十七条**　在中国没有经常居所或者营业所的外国人、外国企业或者外国其他组织在中国申请专利的，依照其所属国同中国签订的协议或者共同参加的国际条约，或者依照互惠原则，根据本法办理。  **第十八条**　在中国没有经常居所或者营业所的外国人、外国企业或者外国其他组织在中国申请专利和办理其他专利事务的，应当委托依法设立的专利代理机构办理。  中国单位或者个人在国内申请专利和办理其他专利事务的，可以委托依法设立的专利代理机构办理。  专利代理机构应当遵守法律、行政法规，按照被代理人的委托办理专利申请或者其他专利事务；对被代理人发明创造的内容，除专利申请已经公布或者公告的以外，负有保密责任。专利代理机构的具体管理办法由国务院规定。  **第十九条**　任何单位或者个人将在中国完成的发明或者实用新型向外国申请专利的，应当事先报经国务院专利行政部门进行保密审查。保密审查的程序、期限等按照国务院的规定执行。  中国单位或者个人可以根据中华人民共和国参加的有关国际条约提出专利国际申请。申请人提出专利国际申请的，应当遵守前款规定。  国务院专利行政部门依照中华人民共和国参加的有关国际条约、本法和国务院有关规定处理专利国际申请。  对违反本条第一款规定向外国申请专利的发明或者实用新型，在中国申请专利的，不授予专利权。  **第二十条**　申请专利和行使专利权应当遵循诚实信用原则。不得滥用专利权损害公共利益或者他人合法权益。  滥用专利权，排除或者限制竞争，构成垄断行为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反垄断法》处理。  **第二十一条**　国务院专利行政部门应当按照客观、公正、准确、及时的要求，依法处理有关专利的申请和请求。  国务院专利行政部门应当加强专利信息公共服务体系建设，完整、准确、及时发布专利信息，提供专利基础数据，定期出版专利公报，促进专利信息传播与利用。  在专利申请公布或者公告前，国务院专利行政部门的工作人员及有关人员对其内容负有保密责任。  **第二章　授予专利权的条件**  **第二十二条**　授予专利权的发明和实用新型，应当具备新颖性、创造性和实用性。  新颖性，是指该发明或者实用新型不属于现有技术；也没有任何单位或者个人就同样的发明或者实用新型在申请日以前向国务院专利行政部门提出过申请，并记载在申请日以后公布的专利申请文件或者公告的专利文件中。  创造性，是指与现有技术相比，该发明具有突出的实质性特点和显著的进步，该实用新型具有实质性特点和进步。  实用性，是指该发明或者实用新型能够制造或者使用，并且能够产生积极效果。  本法所称现有技术，是指申请日以前在国内外为公众所知的技术。  **第二十三条**　授予专利权的外观设计，应当不属于现有设计；也没有任何单位或者个人就同样的外观设计在申请日以前向国务院专利行政部门提出过申请，并记载在申请日以后公告的专利文件中。  授予专利权的外观设计与现有设计或者现有设计特征的组合相比，应当具有明显区别。  授予专利权的外观设计不得与他人在申请日以前已经取得的合法权利相冲突。  本法所称现有设计，是指申请日以前在国内外为公众所知的设计。  **第二十四条**　申请专利的发明创造在申请日以前六个月内，有下列情形之一的，不丧失新颖性：  （一）在国家出现紧急状态或者非常情况时，为公共利益目的首次公开的；  （二）在中国政府主办或者承认的国际展览会上首次展出的；  （三）在规定的学术会议或者技术会议上首次发表的；  （四）他人未经申请人同意而泄露其内容的。  **第二十五条**　对下列各项，不授予专利权：  （一）科学发现；  （二）智力活动的规则和方法；  （三）疾病的诊断和治疗方法；  （四）动物和植物品种；  （五）原子核变换方法以及用原子核变换方法获得的物质；  （六）对平面印刷品的图案、色彩或者二者的结合作出的主要起标识作用的设计。  对前款第（四）项所列产品的生产方法，可以依照本法规定授予专利权。  **第三章　专利的申请**  **第二十六条**　申请发明或者实用新型专利的，应当提交请求书、说明书及其摘要和权利要求书等文件。  请求书应当写明发明或者实用新型的名称，发明人的姓名，申请人姓名或者名称、地址，以及其他事项。  说明书应当对发明或者实用新型作出清楚、完整的说明，以所属技术领域的技术人员能够实现为准；必要的时候，应当有附图。摘要应当简要说明发明或者实用新型的技术要点。  权利要求书应当以说明书为依据，清楚、简要地限定要求专利保护的范围。  依赖遗传资源完成的发明创造，申请人应当在专利申请文件中说明该遗传资源的直接来源和原始来源；申请人无法说明原始来源的，应当陈述理由。  **第二十七条**　申请外观设计专利的，应当提交请求书、该外观设计的图片或者照片以及对该外观设计的简要说明等文件。  申请人提交的有关图片或者照片应当清楚地显示要求专利保护的产品的外观设计。  **第二十八条**　国务院专利行政部门收到专利申请文件之日为申请日。如果申请文件是邮寄的，以寄出的邮戳日为申请日。  **第二十九条**　申请人自发明或者实用新型在外国第一次提出专利申请之日起十二个月内，或者自外观设计在外国第一次提出专利申请之日起六个月内，又在中国就相同主题提出专利申请的，依照该外国同中国签订的协议或者共同参加的国际条约，或者依照相互承认优先权的原则，可以享有优先权。  申请人自发明或者实用新型在中国第一次提出专利申请之日起十二个月内，或者自外观设计在中国第一次提出专利申请之日起六个月内，又向国务院专利行政部门就相同主题提出专利申请的，可以享有优先权。  **第三十条**　申请人要求发明、实用新型专利优先权的，应当在申请的时候提出书面声明，并且在第一次提出申请之日起十六个月内，提交第一次提出的专利申请文件的副本。  申请人要求外观设计专利优先权的，应当在申请的时候提出书面声明，并且在三个月内提交第一次提出的专利申请文件的副本。  申请人未提出书面声明或者逾期未提交专利申请文件副本的，视为未要求优先权。  **第三十一条**　一件发明或者实用新型专利申请应当限于一项发明或者实用新型。属于一个总的发明构思的两项以上的发明或者实用新型，可以作为一件申请提出。  一件外观设计专利申请应当限于一项外观设计。同一产品两项以上的相似外观设计，或者用于同一类别并且成套出售或者使用的产品的两项以上外观设计，可以作为一件申请提出。  **第三十二条**　申请人可以在被授予专利权之前随时撤回其专利申请。  **第三十三条**　申请人可以对其专利申请文件进行修改，但是，对发明和实用新型专利申请文件的修改不得超出原说明书和权利要求书记载的范围，对外观设计专利申请文件的修改不得超出原图片或者照片表示的范围。  **第四章　专利申请的审查和批准**  **第三十四条**　国务院专利行政部门收到发明专利申请后，经初步审查认为符合本法要求的，自申请日起满十八个月，即行公布。国务院专利行政部门可以根据申请人的请求早日公布其申请。  **第三十五条**　发明专利申请自申请日起三年内，国务院专利行政部门可以根据申请人随时提出的请求，对其申请进行实质审查；申请人无正当理由逾期不请求实质审查的，该申请即被视为撤回。  国务院专利行政部门认为必要的时候，可以自行对发明专利申请进行实质审查。  **第三十六条**　发明专利的申请人请求实质审查的时候，应当提交在申请日前与其发明有关的参考资料。  发明专利已经在外国提出过申请的，国务院专利行政部门可以要求申请人在指定期限内提交该国为审查其申请进行检索的资料或者审查结果的资料；无正当理由逾期不提交的，该申请即被视为撤回。  **第三十七条**　国务院专利行政部门对发明专利申请进行实质审查后，认为不符合本法规定的，应当通知申请人，要求其在指定的期限内陈述意见，或者对其申请进行修改；无正当理由逾期不答复的，该申请即被视为撤回。  **第三十八条**　发明专利申请经申请人陈述意见或者进行修改后，国务院专利行政部门仍然认为不符合本法规定的，应当予以驳回。  **第三十九条**　发明专利申请经实质审查没有发现驳回理由的，由国务院专利行政部门作出授予发明专利权的决定，发给发明专利证书，同时予以登记和公告。发明专利权自公告之日起生效。  **第四十条**　实用新型和外观设计专利申请经初步审查没有发现驳回理由的，由国务院专利行政部门作出授予实用新型专利权或者外观设计专利权的决定，发给相应的专利证书，同时予以登记和公告。实用新型专利权和外观设计专利权自公告之日起生效。  **第四十一条**　专利申请人对国务院专利行政部门驳回申请的决定不服的，可以自收到通知之日起三个月内向国务院专利行政部门请求复审。国务院专利行政部门复审后，作出决定，并通知专利申请人。  专利申请人对国务院专利行政部门的复审决定不服的，可以自收到通知之日起三个月内向人民法院起诉。  **第五章　专利权的期限、终止和无效**  **第四十二条**　发明专利权的期限为二十年，实用新型专利权的期限为十年，外观设计专利权的期限为十五年，均自申请日起计算。  自发明专利申请日起满四年，且自实质审查请求之日起满三年后授予发明专利权的，国务院专利行政部门应专利权人的请求，就发明专利在授权过程中的不合理延迟给予专利权期限补偿，但由申请人引起的不合理延迟除外。  为补偿新药上市审评审批占用的时间，对在中国获得上市许可的新药相关发明专利，国务院专利行政部门应专利权人的请求给予专利权期限补偿。补偿期限不超过五年，新药批准上市后总有效专利权期限不超过十四年。  **第四十三条**　专利权人应当自被授予专利权的当年开始缴纳年费。  **第四十四条**　有下列情形之一的，专利权在期限届满前终止：  （一）没有按照规定缴纳年费的；  （二）专利权人以书面声明放弃其专利权的。  专利权在期限届满前终止的，由国务院专利行政部门登记和公告。  **第四十五条**　自国务院专利行政部门公告授予专利权之日起，任何单位或者个人认为该专利权的授予不符合本法有关规定的，可以请求国务院专利行政部门宣告该专利权无效。  **第四十六条**　国务院专利行政部门对宣告专利权无效的请求应当及时审查和作出决定，并通知请求人和专利权人。宣告专利权无效的决定，由国务院专利行政部门登记和公告。  对国务院专利行政部门宣告专利权无效或者维持专利权的决定不服的，可以自收到通知之日起三个月内向人民法院起诉。人民法院应当通知无效宣告请求程序的对方当事人作为第三人参加诉讼。  **第四十七条**　宣告无效的专利权视为自始即不存在。  宣告专利权无效的决定，对在宣告专利权无效前人民法院作出并已执行的专利侵权的判决、调解书，已经履行或者强制执行的专利侵权纠纷处理决定，以及已经履行的专利实施许可合同和专利权转让合同，不具有追溯力。但是因专利权人的恶意给他人造成的损失，应当给予赔偿。  依照前款规定不返还专利侵权赔偿金、专利使用费、专利权转让费，明显违反公平原则的，应当全部或者部分返还。  **第六章　专利实施的特别许可**  **第四十八条**　国务院专利行政部门、地方人民政府管理专利工作的部门应当会同同级相关部门采取措施，加强专利公共服务，促进专利实施和运用。  **第四十九条**　国有企业事业单位的发明专利，对国家利益或者公共利益具有重大意义的，国务院有关主管部门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报经国务院批准，可以决定在批准的范围内推广应用，允许指定的单位实施，由实施单位按照国家规定向专利权人支付使用费。  **第五十条**　专利权人自愿以书面方式向国务院专利行政部门声明愿意许可任何单位或者个人实施其专利，并明确许可使用费支付方式、标准的，由国务院专利行政部门予以公告，实行开放许可。就实用新型、外观设计专利提出开放许可声明的，应当提供专利权评价报告。  专利权人撤回开放许可声明的，应当以书面方式提出，并由国务院专利行政部门予以公告。开放许可声明被公告撤回的，不影响在先给予的开放许可的效力。  **第五十一条**　任何单位或者个人有意愿实施开放许可的专利的，以书面方式通知专利权人，并依照公告的许可使用费支付方式、标准支付许可使用费后，即获得专利实施许可。  开放许可实施期间，对专利权人缴纳专利年费相应给予减免。  实行开放许可的专利权人可以与被许可人就许可使用费进行协商后给予普通许可，但不得就该专利给予独占或者排他许可。  **第五十二条**　当事人就实施开放许可发生纠纷的，由当事人协商解决；不愿协商或者协商不成的，可以请求国务院专利行政部门进行调解，也可以向人民法院起诉。  **第五十三条**　有下列情形之一的，国务院专利行政部门根据具备实施条件的单位或者个人的申请，可以给予实施发明专利或者实用新型专利的强制许可：  （一）专利权人自专利权被授予之日起满三年，且自提出专利申请之日起满四年，无正当理由未实施或者未充分实施其专利的；  （二）专利权人行使专利权的行为被依法认定为垄断行为，为消除或者减少该行为对竞争产生的不利影响的。  **第五十四条**　在国家出现紧急状态或者非常情况时，或者为了公共利益的目的，国务院专利行政部门可以给予实施发明专利或者实用新型专利的强制许可。  **第五十五条**　为了公共健康目的，对取得专利权的药品，国务院专利行政部门可以给予制造并将其出口到符合中华人民共和国参加的有关国际条约规定的国家或者地区的强制许可。  **第五十六条**　一项取得专利权的发明或者实用新型比前已经取得专利权的发明或者实用新型具有显著经济意义的重大技术进步，其实施又有赖于前一发明或者实用新型的实施的，国务院专利行政部门根据后一专利权人的申请，可以给予实施前一发明或者实用新型的强制许可。  在依照前款规定给予实施强制许可的情形下，国务院专利行政部门根据前一专利权人的申请，也可以给予实施后一发明或者实用新型的强制许可。  **第五十七条**　强制许可涉及的发明创造为半导体技术的，其实施限于公共利益的目的和本法第五十三条第（二）项规定的情形。  **第五十八条**　除依照本法第五十三条第（二）项、第五十五条规定给予的强制许可外，强制许可的实施应当主要为了供应国内市场。  **第五十九条**　依照本法第五十三条第（一）项、第五十六条规定申请强制许可的单位或者个人应当提供证据，证明其以合理的条件请求专利权人许可其实施专利，但未能在合理的时间内获得许可。  **第六十条**　国务院专利行政部门作出的给予实施强制许可的决定，应当及时通知专利权人，并予以登记和公告。  给予实施强制许可的决定，应当根据强制许可的理由规定实施的范围和时间。强制许可的理由消除并不再发生时，国务院专利行政部门应当根据专利权人的请求，经审查后作出终止实施强制许可的决定。  **第六十一条**　取得实施强制许可的单位或者个人不享有独占的实施权，并且无权允许他人实施。  **第六十二条**　取得实施强制许可的单位或者个人应当付给专利权人合理的使用费，或者依照中华人民共和国参加的有关国际条约的规定处理使用费问题。付给使用费的，其数额由双方协商；双方不能达成协议的，由国务院专利行政部门裁决。  **第六十三条**　专利权人对国务院专利行政部门关于实施强制许可的决定不服的，专利权人和取得实施强制许可的单位或者个人对国务院专利行政部门关于实施强制许可的使用费的裁决不服的，可以自收到通知之日起三个月内向人民法院起诉。  **第七章　专利权的保护**  **第六十四条**　发明或者实用新型专利权的保护范围以其权利要求的内容为准，说明书及附图可以用于解释权利要求的内容。  外观设计专利权的保护范围以表示在图片或者照片中的该产品的外观设计为准，简要说明可以用于解释图片或者照片所表示的该产品的外观设计。  **第六十五条**　未经专利权人许可，实施其专利，即侵犯其专利权，引起纠纷的，由当事人协商解决；不愿协商或者协商不成的，专利权人或者利害关系人可以向人民法院起诉，也可以请求管理专利工作的部门处理。管理专利工作的部门处理时，认定侵权行为成立的，可以责令侵权人立即停止侵权行为，当事人不服的，可以自收到处理通知之日起十五日内依照《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向人民法院起诉；侵权人期满不起诉又不停止侵权行为的，管理专利工作的部门可以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进行处理的管理专利工作的部门应当事人的请求，可以就侵犯专利权的赔偿数额进行调解；调解不成的，当事人可以依照《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向人民法院起诉。  **第六十六条**　专利侵权纠纷涉及新产品制造方法的发明专利的，制造同样产品的单位或者个人应当提供其产品制造方法不同于专利方法的证明。  专利侵权纠纷涉及实用新型专利或者外观设计专利的，人民法院或者管理专利工作的部门可以要求专利权人或者利害关系人出具由国务院专利行政部门对相关实用新型或者外观设计进行检索、分析和评价后作出的专利权评价报告，作为审理、处理专利侵权纠纷的证据；专利权人、利害关系人或者被控侵权人也可以主动出具专利权评价报告。  **第六十七条**　在专利侵权纠纷中，被控侵权人有证据证明其实施的技术或者设计属于现有技术或者现有设计的，不构成侵犯专利权。  **第六十八条**　假冒专利的，除依法承担民事责任外，由负责专利执法的部门责令改正并予公告，没收违法所得，可以处违法所得五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在五万元以下的，可以处二十五万元以下的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六十九条**　负责专利执法的部门根据已经取得的证据，对涉嫌假冒专利行为进行查处时，有权采取下列措施：  （一）询问有关当事人，调查与涉嫌违法行为有关的情况；  （二）对当事人涉嫌违法行为的场所实施现场检查；  （三）查阅、复制与涉嫌违法行为有关的合同、发票、账簿以及其他有关资料；  （四）检查与涉嫌违法行为有关的产品；  （五）对有证据证明是假冒专利的产品，可以查封或者扣押。  管理专利工作的部门应专利权人或者利害关系人的请求处理专利侵权纠纷时，可以采取前款第（一）项、第（二）项、第（四）项所列措施。  负责专利执法的部门、管理专利工作的部门依法行使前两款规定的职权时，当事人应当予以协助、配合，不得拒绝、阻挠。  **第七十条**　国务院专利行政部门可以应专利权人或者利害关系人的请求处理在全国有重大影响的专利侵权纠纷。  地方人民政府管理专利工作的部门应专利权人或者利害关系人请求处理专利侵权纠纷，对在本行政区域内侵犯其同一专利权的案件可以合并处理；对跨区域侵犯其同一专利权的案件可以请求上级地方人民政府管理专利工作的部门处理。  **第七十一条**　侵犯专利权的赔偿数额按照权利人因被侵权所受到的实际损失或者侵权人因侵权所获得的利益确定；权利人的损失或者侵权人获得的利益难以确定的，参照该专利许可使用费的倍数合理确定。对故意侵犯专利权，情节严重的，可以在按照上述方法确定数额的一倍以上五倍以下确定赔偿数额。  权利人的损失、侵权人获得的利益和专利许可使用费均难以确定的，人民法院可以根据专利权的类型、侵权行为的性质和情节等因素，确定给予三万元以上五百万元以下的赔偿。  赔偿数额还应当包括权利人为制止侵权行为所支付的合理开支。  人民法院为确定赔偿数额，在权利人已经尽力举证，而与侵权行为相关的账簿、资料主要由侵权人掌握的情况下，可以责令侵权人提供与侵权行为相关的账簿、资料；侵权人不提供或者提供虚假的账簿、资料的，人民法院可以参考权利人的主张和提供的证据判定赔偿数额。  **第七十二条**　专利权人或者利害关系人有证据证明他人正在实施或者即将实施侵犯专利权、妨碍其实现权利的行为，如不及时制止将会使其合法权益受到难以弥补的损害的，可以在起诉前依法向人民法院申请采取财产保全、责令作出一定行为或者禁止作出一定行为的措施。  **第七十三条**　为了制止专利侵权行为，在证据可能灭失或者以后难以取得的情况下，专利权人或者利害关系人可以在起诉前依法向人民法院申请保全证据。  **第七十四条**　侵犯专利权的诉讼时效为三年，自专利权人或者利害关系人知道或者应当知道侵权行为以及侵权人之日起计算。  发明专利申请公布后至专利权授予前使用该发明未支付适当使用费的，专利权人要求支付使用费的诉讼时效为三年，自专利权人知道或者应当知道他人使用其发明之日起计算，但是，专利权人于专利权授予之日前即已知道或者应当知道的，自专利权授予之日起计算。  **第七十五条**　有下列情形之一的，不视为侵犯专利权：  （一）专利产品或者依照专利方法直接获得的产品，由专利权人或者经其许可的单位、个人售出后，使用、许诺销售、销售、进口该产品的；  （二）在专利申请日前已经制造相同产品、使用相同方法或者已经作好制造、使用的必要准备，并且仅在原有范围内继续制造、使用的；  （三）临时通过中国领陆、领水、领空的外国运输工具，依照其所属国同中国签订的协议或者共同参加的国际条约，或者依照互惠原则，为运输工具自身需要而在其装置和设备中使用有关专利的；  （四）专为科学研究和实验而使用有关专利的；  （五）为提供行政审批所需要的信息，制造、使用、进口专利药品或者专利医疗器械的，以及专门为其制造、进口专利药品或者专利医疗器械的。  **第七十六条**　药品上市审评审批过程中，药品上市许可申请人与有关专利权人或者利害关系人，因申请注册的药品相关的专利权产生纠纷的，相关当事人可以向人民法院起诉，请求就申请注册的药品相关技术方案是否落入他人药品专利权保护范围作出判决。国务院药品监督管理部门在规定的期限内，可以根据人民法院生效裁判作出是否暂停批准相关药品上市的决定。  药品上市许可申请人与有关专利权人或者利害关系人也可以就申请注册的药品相关的专利权纠纷，向国务院专利行政部门请求行政裁决。  国务院药品监督管理部门会同国务院专利行政部门制定药品上市许可审批与药品上市许可申请阶段专利权纠纷解决的具体衔接办法，报国务院同意后实施。  **第七十七条**　为生产经营目的使用、许诺销售或者销售不知道是未经专利权人许可而制造并售出的专利侵权产品，能证明该产品合法来源的，不承担赔偿责任。  **第七十八条**　违反本法第十九条规定向外国申请专利，泄露国家秘密的，由所在单位或者上级主管机关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七十九条**　管理专利工作的部门不得参与向社会推荐专利产品等经营活动。  管理专利工作的部门违反前款规定的，由其上级机关或者监察机关责令改正，消除影响，有违法收入的予以没收；情节严重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第八十条**　从事专利管理工作的国家机关工作人员以及其他有关国家机关工作人员玩忽职守、滥用职权、徇私舞弊，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处分。  **第八章　附　则**  **第八十一**条　向国务院专利行政部门申请专利和办理其他手续，应当按照规定缴纳费用。  **第八十二条**　本法自1985年4月1日起施行。 |